

2020년 제2회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직원채용 공고

재단법인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의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재단과 함께 성장해갈 유능하고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모바랍니다.

2020년 12월 14일

재단법인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 7명

채용 직급	채용분야 (예정)	예정 인원	주요 직무내용	비 고
일반직 5급 (경력직)	법인회계담당	1	- 법인 예산, 회계 등 일반행정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업무 등	
	학교밖청소년 담당	1	- 학교밖 청소년 지원업무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업무	
일반직 7급	청소년상담사	1	- 청소년상담 및 일반행정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업무	
	청소년지도사	2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업무	
기간제 근로자	청소년동반자 (전일제)	1	- 찾아가는 청소년 상담업무 등	
	시설관리원 (주 30시간)	1	- 청소년문화센터 내, 외 청사관리 등 (전기, 설비, 소방 등)	

2. 근무예정일 및 근무처

- 근무예정일 : 2021년 1~2월 예정 (* 채용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무처 : 재단법인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 논산시 출연기관)

3. 자격기준

가.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채용직급	채용분야	자 격 요 건
일반직 5급 (경력직)	법인회계담당	○ 공공기관, 지방 출자·출연기관 및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재단, 학교 등에서 정규직으로 예산, 회계업무 1년 이상인 사람 ※ 우대사항 - 예산회계프로그램(G20) 사용 가능자 - 회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학교밖청소년 담당	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밖 청소년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②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③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④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일반직 7급	청소년상담사	① 대학원의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③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④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⑤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⑥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청소년지도사	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에 따른 만34세 이하로서, ②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소지한 사람
기간제 근로자	청소년동반자 (전일제)	※ [붙임] 세부 자격요건 참조
	시설관리원 (주 30시간)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만55세 이상으로, ② 전기·기계·소방 등 시설분야 기능사 이상 소지하고 청사 및 시설관리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우대사항 - 1종대형 운전면허 소지자(45인승 버스운전 가능자)

※ 실무경력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의 경력만 인정함.

i. 청소년상담사 자격요건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 준용 p.384’

1.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 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ii. 학교밖청소년 담당 자격요건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 준용 p.828’

1. “청소년 관련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학교밖 청소년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 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육성·활동·복지·보호 등에 관한 업무
 -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9항에 따라 설치된 전문기관에서 상근으로 수행하는 상담업무
 - 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정책 관련 행정업무

[붙임]

청소년동반자(전일제) 세부 자격요건

① 관련 자격증 소지	② 청소년상담 및 지도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③ 상담 및 지도관련 대학원 재학 이상
<p>◆ 1개 이상 자격증 소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 사회복지사 1급 이상 - 상담심리사 2급 이상 (한국상담심리학회) - 전문상담사 2급 이상 (한국상담학회) - 임상심리사 2급 이상 - 직업상담사 2급 이상 -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p>◆ 청소년상담 및 지도 관련 실무경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하는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지도에 관한 업무 (단, 시간제 근무경력 등은 해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정책 및 업무 수행 	<p>◆ 상담 및 지도 관련 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지도)학,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보건학 및 상담·지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학문 분야

○ 전일제동반자 : 2020년도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 준용

- (자격요건 ①&② 충족)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청소년상담 및 지도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20년은 ②요건 해석 시 '③ 상담 및 지도 관련 대학원 3학기 재학 이상'도 포함 가능

나. 공통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재단법인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인사규정」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 면접시험일 기준적용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청소년 관련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던 사람
13.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다. 기타사항

- 성 별 :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연 령 : 제한 없음 (※ 청소년지도사 제외)

- 청소년지도사(일반직 7급)의 응시연령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 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1년이상 2년미만 : 2세, 2년이상 : 3세

- 가점부여 : 만점의 5~10%

-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② 논산시 청소년자치기구에 1기 이상 참여자

논산시 청소년자치기구란? 논산시에서 운영한 청소년자치기구로서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대학생봉사단, 대학생멘토지원단 등을 말함.

- 겸직제한 : 본 공고에 따라 채용되는 사람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타 기관에 전속하는 직을 겸할 수 없음.

4. 근로조건

- 근무시간 : 주 40시간, 1일 8시간 (초과근무시간 별도)

※ 재단사업의 특성상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근무할 수 있음

- 보 수 : 재단법인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보수규정에 따름

예시) - 5급 기본급 : 2,193,610원 (5호봉 기준)

- 7급 기본급 : 1,930,340원 (1호봉 기준)

수당 : 교통비, 급량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등

- 청소년동반자 :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에 따름

- 시설관리원(주30시간) : 2021년 생활임금 반영 *1일 단가 61,200원

5. 시험방법

채용분야 \ 시험단계	1차 시험	2차 시험	비 고
공 통	서류전형	면접시험 (※직무수행계획발표)	※ 5분 이내

6. 채용일정

채용분야	추진내용	추진일정	합격자발표	장 소
공 통	채용공고	2020. 12. 14(월) ~ 12. 30(수)	-	아래 홈페이지
	응시원서접수	2020. 12. 23(수) ~ 12. 30(수)	-	재단 법인사무국
	서류전형(1차)	2021. 1. 4(월) ~ 1. 5(화)	2021. 1. 7(목)	재단 홈페이지
	면접전형(2차)	2021. 1. 12(화)	2021. 1. 15(금) (예정)	추후 장소안내 (일정변경가능)

※ 논산시청, 재단,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고

《재공고 및 변경공고에 관한 사항》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예정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수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면접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하며, 재공고시에도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수의 2배수에 미달일 경우에는 서류전형, 면접절차 진행 (기응시자는 채용시한 것으로 간주)

7. 응시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20. 12. 23(수) ~ 12. 30(수) 09:00~18:00 (8일간)

(※ 점심시간 12:00~13:00 및 공휴일 제외)

나. 접수처 : 논산시청소년문화센터 2층 재단 법인사무국

다. 접수방법 : 접수처에 본인 직접 방문제출 (대리 및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필수 및 선택적 제출 목록으로 구분

채용분야	제출서류 목록	매수	비고
전 직종 공 통	응시원서	1	
	이력서(사진부착)	1	
	자기소개서	1	
	경력기술서 (경력직 응시자에 한함)	1	
	직무수행계획서 (기간제근로자 제외)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력 및 병역사항 포함)	1	
	면허(자격증) 사본 (원본지참)	1	
	졸업증명서	1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첨부)	1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	

※ 제증명 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유효기간 이내)

※ 응시원서, 이력서 등은 첨부물 다운 받아 작성

8. 기타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임용자격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라. 합격자 통지 이후 결격사유 조희 및 채용신체 검사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마.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사람은 반드시 면접시험 전일까지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 응시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 없을 경우, 면접시험에 참여 불가(불합격 처리)
- 바. 본 채용시험은 예비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최종합격자가 허위사실 또는 결격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예비합격자를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합니다.
- 사. 본 채용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논산시, 재단,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에 재공고합니다.
- 아. 기타 사항은 재단 법인사무국 (☎041-730-60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전자우편 제출 및 최종합격자 제외)는 기 제출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재단 공개채용에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제출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제출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제출서류 반환신청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팩스(041-730-6010) 또는 이메일(duk21c@korea.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며, 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재단에서 부담합니다. (접수여부 확인 필수 ☎041-730-6011)
4. 재단은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가 발표된 날로부터 18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 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